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836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2025. 8. 7.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 개편 사항을 하위 고시에 일치시키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른 인용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정의 현행화(안 제2조제1호)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해화학물질 정의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함.

나. 인용 고시 소관기관 명칭 및 표기 오류 정비(안 별표 1)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에 따라 고시 내 인용 기관명을 종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함.
- 저온저장탱크 수식 및 물질명의 불필요한 위첨자를 삭제함.

다. 재검토기한 기준 시점 현행화(안 제6조)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기준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현행화함.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43,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kjshin@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 (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 개편 사항을 하위 고시에 일치시키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른 인용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정의 현행화(안 제2조제1호)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해화학물질 정의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함.

나. 인용 고시 소관기관 명칭 및 표기 오류 정비(안 별표 1)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에 따라 고시 내 인용기관명을 종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함.
- 저온저장탱크 수식 및 물질명의 불필요한 위첨자를 삭제함.

다. 재검토기한 기준 시점 현행화(안 제6조)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기준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현행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제6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표의 구분란 중 “인화성가스¹”을 “인화성가스”로, “인화성액체³”를 “인화성액체”로 하고, 같은 목 표의 갑종 보호대상란 중 “ $\sqrt{(X^2+10,000)}$ ”을 “ $\sqrt{(X+10,000)}$ ”으로 하며, 같은 목 비고 제1호 및 제3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전단 중 “독성물질¹”을 “독성물질”로 하고, 같은 호 표의 구분란 중 “가스²”를 “가스”로, “휘발성 액체³”를 “휘발성 액체”로 하며, 같은 호 비고 제1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 4. (생략)	제2조(정의) ----- -----. 1.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 ----- -----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 -----.
<신 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제4조 관련)	[별표 1]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제4조 관련)

1. (생 략)

가. 인화성가스 및 인화성액체

구분	시설용량	갑종 보호대상	을종 보호대상
인화성 가스 ¹	1만m ³ 이하	17m	12m
	1만m ³ 초과~2 만m ³ 이하	21m	14m
	2만m ³ 초과~3 만m ³ 이하	24m	16m
	3만m ³ 초과~4 만m ³ 이하	27m	18m
	4만m ³ 초과~5 만m ³ 이하	30m	20m
	5만m ³ 초과~99 만m ³ 이하	30m [저온저장탱크 는 $\frac{3}{25}\sqrt{(X^2+10,000)}$]	20m [저온저장탱크 는 $\frac{2}{25}\sqrt{(X+10,000)}$]
	99만m ³ 초과	30m (인화성가스 저온저장탱크 는 120m)	20m [인화성가스 저온저장탱크 는 80m]
인화성 액체 ³	-	30m	10m

비고

1. 인화성가스란 섭씨 20도, 표준압력(101.3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로써 규칙 별표 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화성가스 구분1, 구분2로 분류된 것에 한정한다.

2. X는 해당 취급시설의 최대

1. (현행과 같음)

가. 인화성가스 및 인화성액체

구분	시설용량	갑종 보호대상	을종 보호대상
인화성 가스	1만m ³ 이하	17m	12m
	1만m ³ 초과~2 만m ³ 이하	21m	14m
	2만m ³ 초과~3 만m ³ 이하	24m	16m
	3만m ³ 초과~4 만m ³ 이하	27m	18m
	4만m ³ 초과~5 만m ³ 이하	30m	20m
	5만m ³ 초과~99 만m ³ 이하	30m [저온저장탱크 는 $\frac{3}{25}\sqrt{(X+10,000)}$]	20m [저온저장탱크 는 $\frac{2}{25}\sqrt{(X+10,000)}$]
	99만m ³ 초과	30m (인화성가스 저온저장탱크 는 120m)	20m [인화성가스 저온저장탱크 는 80m]
인화성 액체	-	30m	10m

비고

1. 인화성가스란 섭씨 20도, 표준압력(101.3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로써 규칙 별표 3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화성가스 구분1, 구분2로 분류된 것에 한정한다.

2. X는 해당 취급시설의 최대

취급량을 말하며,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m^3 ,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kg 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인화점이 $60^{\circ}C$ 이하인 액체를 말하며, 규칙 별표 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화성액체 구분1, 구분2, 구분3으로 분류된 것에 한정한다.

취급량을 말하며,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m^3 ,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kg 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인화점이 $60^{\circ}C$ 이하인 액체를 말하며, 규칙 별표 3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화성액체 구분1, 구분2, 구분3으로 분류된 것에 한정한다.

2. 급성 흡입 독성물질¹을 취급하는 시설·설비는 그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다음 표에 의한 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내부에 있는 보호대상은 제외한다.

2. 급성 흡입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설비는 그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다음 표에 의한 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내부에 있는 보호대상은 제외한다.

구분	시설용량	갑종 보호대상	을종 보호대상
<u>가스²</u>	1만 m^3 이하	17m	12m
	1만 m^3 초과~2만 m^3 이하	21m	14m
	2만 m^3 초과~3만 m^3 이하	24m	16m
	3만 m^3 초과~4만 m^3 이하	27m	18m
	4만 m^3 초과	30m	20m
<u>휘발성 액체³</u>	-	17m	12m

구분	시설용량	갑종 보호대상	을종 보호대상
<u>가스</u>	1만 m^3 이하	17m	12m
	1만 m^3 초과~2만 m^3 이하	21m	14m
	2만 m^3 초과~3만 m^3 이하	24m	16m
	3만 m^3 초과~4만 m^3 이하	27m	18m
	4만 m^3 초과	30m	20m
<u>휘발성 액체</u>	-	17m	12m

비고 1. 급성 흡입 독성물질이란 흡입 노출되어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규칙 별표 3에 따라 “<u>국립환경과학원</u> 고시 「<u>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u>」에서 구분 1, 구분2, 구분3으로 분류된 것에 한한다. 2. ~ 3. (생 략)	비고 1. 급성 흡입 독성물질이란 흡입 노출되어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규칙 별표 3에 따라 <u>화학물질안전원</u> 고시 「<u>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u>」에서 구분 1, 구분2, 구분3으로 분류된 것에 한한다. 2. ~ 3. (현행과 같음)
3.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을 동시에 가진 경우에는 물리적 위험성을 우선적용한다.	3.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을 동시에 가진 경우에는 물리적 위험성을 우선적용한다.